

의안번호	2200396
의 퇴 인	김동아의원
회 답 일	2024.07.31.
추 계 번호	24D076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00조의2(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) 신설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함. 다만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0조의2(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 및 영상녹화 의무화 (안 제200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, 원격 화상 조사를 위한 장비 설치, 영상녹화 정보의 저장 및 관리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검사 등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불가로 인한 수용자의 수사기관 출석 비율, 영상녹화 정보의 증가로 인한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완 및 확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
- 수용자는 교정기관에서 벗어나 법률이 정하는 형사·민사·가사재판 등의 법정절차에 참여하거나 검찰의 수사 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하며, 법무부의 「2023년 통계연보」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최근 3년(2020~2022년) 평균 39,476건
- 개정안에 따라 검사 등이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석시키지 않고 교정시설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연간 약 40,000건의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함
- 다만, 검사 등이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수용자를 출석시킬 수 있어 실제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 건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,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보완 및 확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